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9.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4. 9.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김 길 영

가. 제안이유

대형 할인매장의 확산에 따라 점차 침체되어가는 골목형 영세 밀집점포 등 재래시장을 유통환경 변화에 맞출 수 있는 환경수준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법률제6887호, ‘03.5.27)”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안 제2조제3호)

0 점용료 산정기준(안 제3조관련 별표)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0 동 개정조례안은 2003. 5. 27일 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10,00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골목형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0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부과하지 않았음.

0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0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겠음.

0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이면도로나 도로변의 건물 후퇴선에 설치된 차광막은 전부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0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물의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0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우리구에 재래시장으로 지정·공고된 곳이 있는가?

0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등록14개소, 무등록 2개소, 휴업 1개소가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8.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대형 할인매장의 확산에 따라 점차 침체되어가는 골목형 영세밀집점포 등 재래시장을 유통환경 변화에 맞출 수 있는 환경수준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제6887호, ‘03.5.27)”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안 제2조제3호)

나. 점용료 산정기준(안 제3조관련 별표)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금액

3. 개정근거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법률제6887호, 2003.5.27)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04. 7 .15 ~ 8. 5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04. 8. 16)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제3조 관련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물의 종류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을 “점용물의 종류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 하여 “11”란으로 하고,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0.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생략) 1, 2호(생략) 〈신 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현행과 같음) 1, 2호(현행과 같음) 3.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 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 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내 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 에 0.01을 곱한금액	10.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 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 에 0.0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 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 에 0.05를 곱한금액					
11. <신 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 작 물 · 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주 택 기 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